

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설치조례 개정
조례(안)

| | |
|-----|-----|
| 의안호 | 4/5 |
|-----|-----|

제출년월일: 1994. 12.

제출자: 충청북도지사

○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였던바.
- 건설부 승인 사항(청주과학 산업 지방공업단지)과 내무부 승인사항(청주신산업기술도시)의 명칭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주민과 관련 공무원까지도 혼동을 하여 명칭 개정을 원하고 있고,
- 청주라는 명칭사용으로 인하여 청주시 산하사업소로 알게하는등 대외기관과의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우리도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주체를 쉽게 인지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,
-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한 건설 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코자 함과,
- 현재의 업무기능이 청주「테크노밸」 업무만 전담토록 되어있으나 충청북도의 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전담기구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면서,
- 기구 존치기한을 '94년말에서 1996년까지로 연장 하여줄것을 내무부에 요청하여 내무부 장관의승인(지기 12200-789호 1994. 12. 8)을 받았기에 개정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조례명이 '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'로 된것을

'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'로 하고.

- 과학단지의 건설 전담기구 명칭도 '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'에서
 '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'으로 개칭하며.
 - 업무의 기능도 '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사업'에서
 '과학산업단지건설사업'으로 하고.
 - 건설협의회 운영규정 신설과
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실비보상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며.
 - 부칙의 유효기한도 '1994년 12월 31까지'를
 '1996년 12월 31까지'로 함.
- 관련법령
-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(별첨)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과학산업단지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기획단은 충청북도 청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1. 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
2. 유치기업 선정, 협약, 시설지도, 지원
3. 각종 사업추진협의기구 조직운영
4. 토지거래 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
5. 토지감정, 보상 및 주민이주 종합대책 수립집행
6. 단지조성사업 추진 및 지구내 공사설계 시공 지도감독
7.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사업시행자 지정
8. 단지분양 공급 및 용지관리 대책
9. 단지내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시공관리
10. 도시시설의 기본협의서 작성운영
11. 각종 대형사업의 홍보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
12. 기타 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(단장) ① 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기획단에 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건설추진협의회) ① 충청북도내 과학산업단지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추진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부지사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단장으로 한다.
-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
 - 2. 지역개발 및 도시건설과 과학산업단지건설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인사
 - 3. 과학산업단지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행정 공무원
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
-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개발담당관으로 한다.
-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- ⑥ 위원중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조내지 제5조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- ② 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6년 12월31일 이를 폐지한다.